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현 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62

발의연월일: 2020년 6월 일

발 의 자: 김현희, 김성한, 윤유선, 이의걸 송영섭, 정정희, 송순효, 김동협 이충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서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되는 인증, 장애인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마. 인증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사.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9조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나. 협조부서: 장애인복지과

다. 입법예고: 2020. 6. 5. ~ 2020. 6. 9.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내 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증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인증제도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6. (생략)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

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